

제2536호
2017. 09. 06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류 용 결
전화: 3396-496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**고 시**

- 제2017-70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
- 제2017-71호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
- 제2017-72호 : 신당동 17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4
- 제2017-73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3

● **공 고**

- 제2017-650호 :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14
- 제2017-651호 :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17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-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70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8월 3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40-11 외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산당동 236-47, -53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40-11	2017.08.30.	다산로29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8-2, -35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 49	2017.08.30.	퇴계로2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71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8월 3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40-11 외 1건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40-11	2017.08.30.	건물철거
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40-13	2017.08.30.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72호

신당동 17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중구청 고시 제2016-56호(2016.5.31)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 승인된 신당동 171번지 외 10필지상 주택건설사업 뉴스테이(기업형 임대주택)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아울러 주택법 제 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9월 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명 : 신당뉴스테이(기업형 임대주택) 신축공사
2. 사업주체
 - 성명: (주)하나스테이 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신동철
 -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3. 사업위치 :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외 10필지
4. 사업계획 변경내역
 - 북측세대를 남측세대로 이동, 외부공간 시설 및 조경면적 변경
 - 단위세대 유효층고 변경, 단위세대 전용면적(31㎡TYPE→32㎡TYPE) 변경
 - 외장(색채)특화디자인 도입으로 인한 입면 외장 변경
5. 「주택법」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의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중구 신당동 171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신당동 171번지 일대	12,916.2	-	12,916.2	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)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

(1)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12,916.2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540.0	4.2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1,287.4	87.4	
일반상업지역		1,088.8	8.4	

(2) 용도지구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 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1,720.2	100.0	
미관지구	일반미관지구	631.4	36.7	중복
	중심지미관지구	1,088.8	63.3	
방화지구		1,088.8	63.3	

2)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(해당없음)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획지 ①	신당동 85-8번지	659.0	단독개발
	신당동 171번지	11,547.0	
	신당동 171-1번지	10.5	
	신당동 171-2번지	23.7	
	신당동 171-3번지	17.0	
	신당동 556번지	136.0	
	신당동 749-1번지	7.0	
	신당동 763번지	99.0	
	신당동 766번지	131.0	
	신당동 767번지	278.0	
	신당동 770-2번지	8.0	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(1) 건축물 용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전 층	비 고
불허 용도	획지 ① 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전용시설 (게임제공업소,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치제공업소, 사행성게임장, 전화방, 성인용품점 등)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) 	제3종 일반주거지역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4조 및 「건축법」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지 정 층	비 고
지정 용도	획지 ① 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업무시설(창업지원센터) ※ 창업지원센터외 용도 불가	

(2) 건축물의 밀도 결정(변경) 조서

① 건폐율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건 폐 율	비 고
획지 ①	51.3%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

② 용적률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
획지 ①	229.4%이하	259.9%이하	363.8%이하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

③ 용적률 인센티브계획

○ 허용용적률

구 분		인센티브(용적률)	비 고
우수디자인		5%	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준용
지속가능형 건축구조	라멘 구조	10%	
	무량판 구조	7%	
	소계	10% 이내	
친환경 신재생에너지	친환경 최우수등급	3%	
	신재생에너지 (건축비의 2% 이상)	2%	
	소계	5% 이내	
합계		20% 이내	

○ 상한용적률 :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

(서울시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)

$\text{허용용적률} + (\text{기준용적률} \times 1.3\alpha \times \text{가중치})$ ※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

④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

○ 임대임무 기간에 따른 용적률 연계 적용

: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임무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, 아래와 같이

용적률을 차등 적용

임대임무기간	10년 이상	20년 이상
용적률	15%	20%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5조 및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5조에 의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

(2) 건축물 높이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최고높이	비 고
획지 ①	70m	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) 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건축한계선	• 획지 ① 전구역 건축한계선 3m	

2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을 보행자 통행을 위한 전면공지로 조성	

3)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건축물 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•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•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	
건축물 외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벽면의 재료, 의장,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폭 20m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•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간판 설치 유도 •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,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	

4) 차량출입 및 주차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(1) 차량출입불허구간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차량출입 불허구간	• 왕십리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출입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차량출입 불허	왕십리로

(2) 주차출입구간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주차출입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선도로변(왕십리로) : 1개소 간선도로변(난계로) : 1개소 	

(3) 주차계획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주차장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및 중구 주차장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	
주차장 설치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상부의 쾌적한 보행환경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응급차량 및 장애인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이외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토록 권장 	

5)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

구 분	계획내용
옥상녹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’ 및 ‘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 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’ 내용 준수
벽면녹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’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
담장의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
중수도/ 빗물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
녹색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」에 따라 녹색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녹색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투수성 주차장으로 조성
야간경관조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설치 권장

6.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
-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

계획내용	비 고
대지의 분할·합병·교환에 관한 사항	
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(신설, 폐지 포함)	
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(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)	
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%이내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	

7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: 붙임
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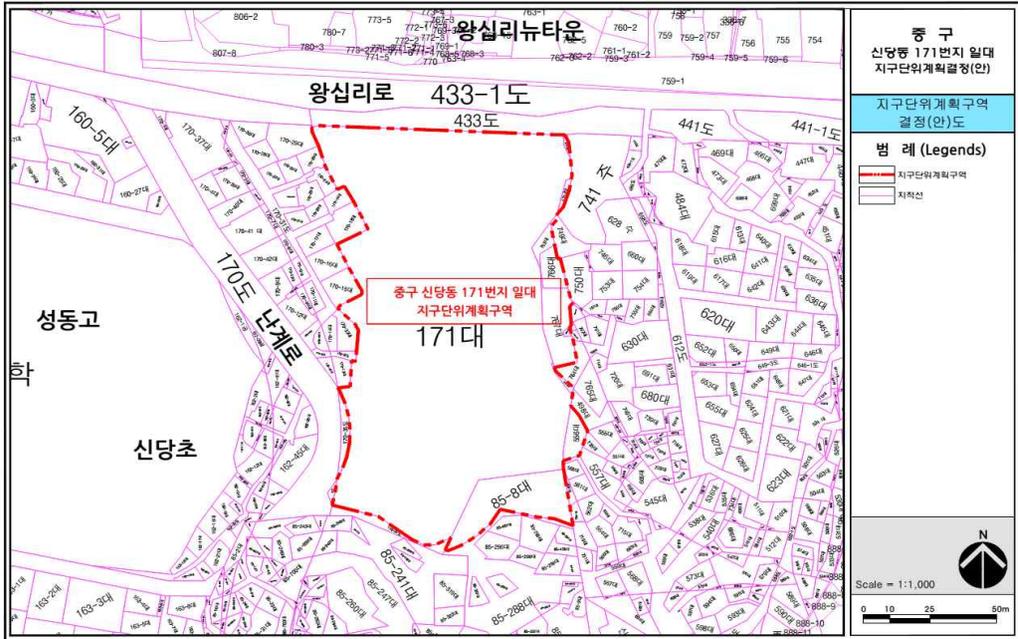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
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
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8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(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) 참조 : 생략(비치된 도서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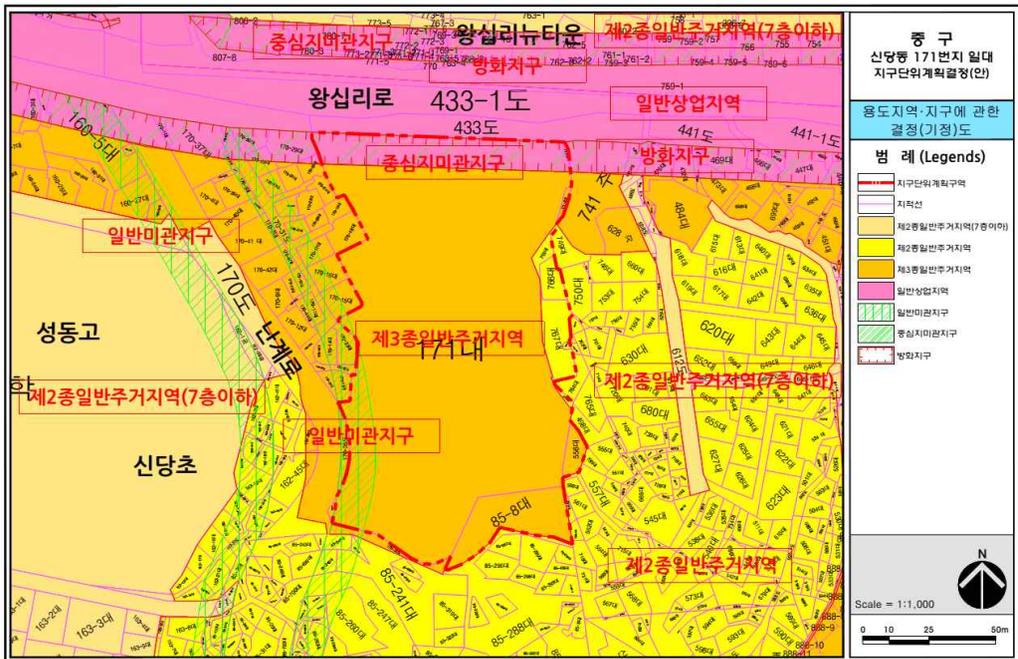
9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(☎02-3396-572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
보입니다.

[붙임] 신당동 171번지 일대 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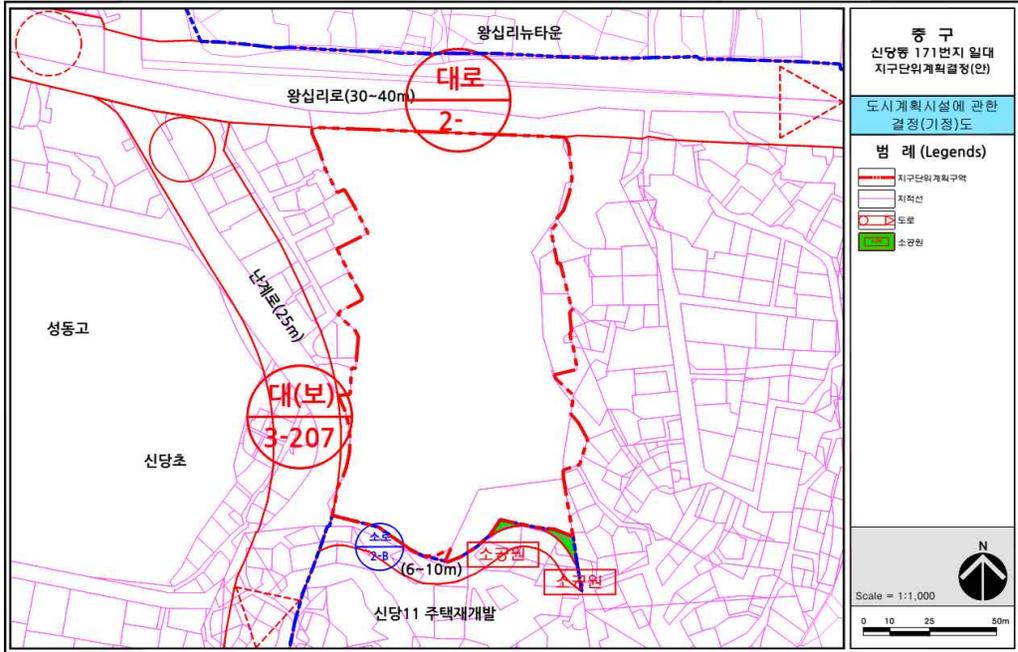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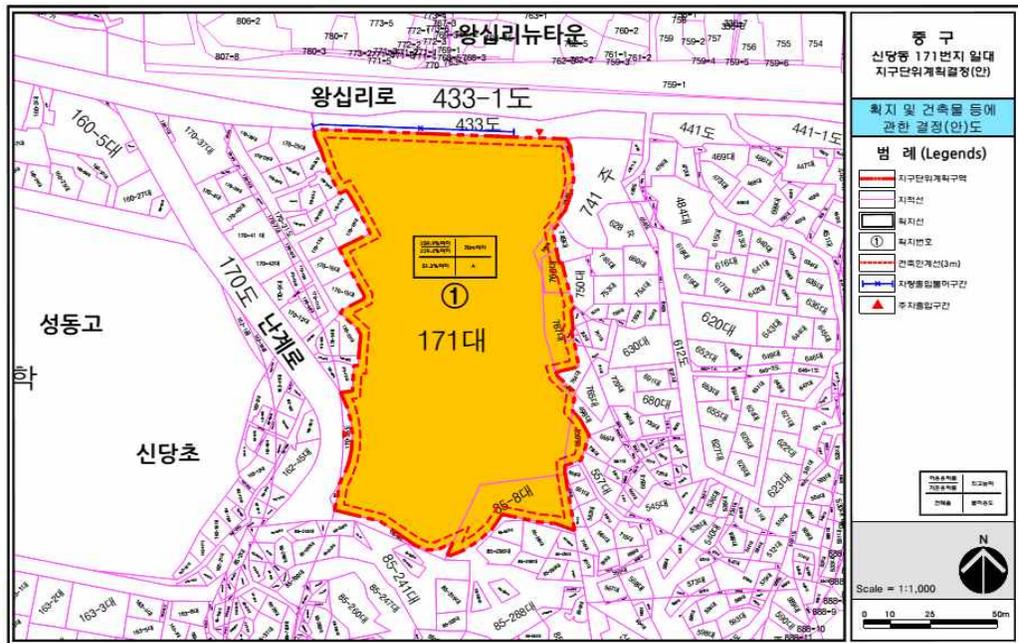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지구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해당없음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73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9월 0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가길 30-4 외 4건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가길 30-4	2017.09.06	건물철거
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가길 32	2017.09.06	건물철거
3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가길 32-1	2017.09.06	건물철거
4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55	2017.09.06	건물말소
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8	2017.09.06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650호

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24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제14조 ~ 제16조에 따라 「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」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7. 9. 6.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아동현황 (정원)	개 원	비 고
동 화 어린이집	중구 청구로64 청구e 편한세상A 106동 1층	250 (지상1)	40명	12.12.26.	시간연장

2. 위탁 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

3. 신청 자격

가. 법인 또는 단체 :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나. 개 인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단,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)

다. 공 통 : 운영체의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

4. 신청 제외 대상

가.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
다.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
라.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시 공신력,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
마.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
5. 신청서 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17. 9. 7.(목) ~ 2017. 9. 26.(화)
- 나. 접수기간 : 2017. 9. 14.(목) ~ 2017. 9. 26.(화) 18:00까지
- 다. 접수장소 : 중구청 여성가족과 (본관 1층)
- 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월~금, 09:00~18:00)
(※토요일·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- 마. 제출서류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	비고
		법인	단체	개인	
개별사항	■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(법인 인감증명서 첨부)	○			
	■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	
	■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	
	■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			○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■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■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합산) 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■ 자부담 승낙서 ■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 				※첨부의 제출서식의거작성

바.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, 요약서 (18부, 3~5페이지 분량)

※ 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
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리벨 표시, 반드시 제본
-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17. 9. 29.(금) 18시까지 e-mail 제출

6. 사업설명회 : 생략

※ 구청방문시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,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

7. 위탁조건

- 가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- 나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시간연장·다문화아동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
- 다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- 라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- 마.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「**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계약서**」로 별도 계약 체결

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- 가. 선정방법 :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
(※ **심사일은 별도 통지**)
- 나. 심사항목 : 5개 분야
 -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
 - ※ 「**2017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(신규·변경)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**」참고
- 다. 면접방법 :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(PPT발표)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(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- 라. 결과발표 :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

9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**제출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**
- 나.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- 다.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라.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- 마. 법인·단체(개인)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.
- 바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제 선정을 무효로 함
- 사.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**고시/공고**」에 공고문과 게재 함
- 아.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(3~5페이지 분량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(☎02-3396-5412)로 문의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651호

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제27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」 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7. 9. 6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종사자	개관일
서울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	중구 다산로32길 5	1,252.68 (지하1,지상3)	17명	12.12.26.

2. 위탁 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
3. 신청 자격

가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나.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
다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

-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함

라.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둘 것

※ 센터장(내정자) :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4. 신청 제외 대상

가.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

다.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
라.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
- 마.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바.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
5. 신청서 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17. 9. 7.(목) ~ 2017. 9. 26.(화)
- 나. 접수기간 : 2017. 9. 14.(목) ~ 2017. 9. 26.(화) 18:00까지
- 다. 접수장소 : 중구청 여성가족과 (본관 1층)
- 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월~금, 09:00~18:00)
(※토요일 · 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- 마. 제출서류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비고
		법인	단체	
개별사항	■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(법인인감증명서 첨부)	○		
	■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
	■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서 ■ 대표자의 경력사항 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■ 법인·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■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■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등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 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 			

바.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, 요약서 (18부, 3~5페이지 분량)

※ **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**
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라벨 표시, 반드시 제본
-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17. 9. 29.(금) 18시까지 e-mail 제출

6. 사업설명회 : 생략

※ 구청 방문시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,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

7. 위탁조건

- 가.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능력을 갖춰야하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.
- 나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.
- 다.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- 라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.
- 마.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규정 등에 의거 위탁 취소
- 바.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『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위·수탁 계약서』에 의함

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- 가. 선정방법 :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
(※ 심사일은 별도 통지)
- 나. 심사항목 : 5개 분야
 -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
- 다. 면접방법 :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센터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 등 종합평가 면접(PT발표)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(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- 라. 결과발표 :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

9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**제출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**
- 나.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- 다.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라.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- 마.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센터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 등 종합평가 면접
- 바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
- 사.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고시/공고」에 공고문과 게재 함
- 아.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(3~5페이지 분량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(☎02-3396-5412)로 문의